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2024.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 석용시기 : 20	24.1.1.기조금액 발표·	문부터			(名工, 行首:	-구의철, 기대	1042, 21	그런다마블, 이판	글, 이시	시요포이구구프ョ는 꼬리의	군역표활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직노) x 율 산업	(재+노) x 율 산업		·격)	ェ+경) x 율	(노+경+일)	(직접공사비) x 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u>재+직노+도급자관급)</u>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		토목 조경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설비 (토목)		토목, 조	목, 조경, 전문 김·설비(토목) 공사	х В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7 13.7 13.7 13.8 13.8 13.8	13.7 13.7 6.5 6.4 6.5 13.8 13.8 6.7 6.6 6.7		ı .	6.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디	<u> 상액^{주)}</u>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0억 미만	13~36개월 (1095일) 36개월 초과 (1096일)	13.7 13.8 13.7	6.8 6.7 6.8 7.1 7.0 7.1	5억			15.0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시	0.68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2.93 3.09		
	6개월 이하 (183일)	13.3 13.3 13.3	6.8 6.7 6.8	5억 30억 ロ		5.5	13.0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u>5억 미만</u>		중건설공사	3.43		
50억 - 300억 미만	7~12개월 (365일) 13~36개월 (1095일)	13.4 13.4 13.4 7.0 6.9 7.0 13.3 13.4 13.3 7.1 7.0 7.1		30억 50억 미						보링그라우팅공사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시	+	-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5 1.85		
	36개월 초과 (1096일)	13.5 13.6 13.5	7.4 7.3 7.4	50억	-	5.0		- 조경공사 	0.18	철근콘크리트공사	0.32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300억 -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7.1 7.0 7.1 7.3 7.2 7.3	100억 대 100억	5.5		12.0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0.16	<u>5억</u>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1.99 2.35	5,499 5,400	
1000억 미만	13~36개월 (1095일) 36개월 초과 (1096일)		7.3 7.3 7.3 7.7 7.6 7.7	300억 [[] 300억	-			-		철강재설치공사		- -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57 1.20	4,411 3,250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1 13.2 13.1	6.3 6.2 6.3	1000억	5.0	4.5	10.0	* 저오레이, 모충	페스기구	그 외	0.10	추정금액 8	추정금액 800억 미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1.97 2.10	-,	
1000억 이상	13~36개월 (1095일)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		중건설공사	2.44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6.9 6.9 6.9 6.9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				쇄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9.)	경우 1,0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66 1.27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페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u>50억 이상</u> 추정금액 800억 이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2.15 2.29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상 건설 (주공종이		중건설공사	2.66				
(上) x 3.56				(직접공사비) x 율				(직접공사비) x 율			경우 1,0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3-620호(2023.12.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요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서치 과그그애 2처마의 이사 거서.	1.38			
[고용보험료]				1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50억 미만 0.081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上) x 월				-	지하철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400억 이상 1.57			토목	철도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차		1.5 장 등) 0.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비의 합계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上专		항만 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턴키·대안공사 0.084		.,	0.071	- 소리자 근자 근립다 기를 포함한 증적 : 세포막(포함적한법적제 포함)되 역입도구박의 업계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13 1.06			댐					* 건설업의 분류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택지개발 의 토목공사(하천 등)				0.084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1.02	조경		조경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미만 1.01			·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축 주택(신축)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역(도급금역+관급금역)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그 밖의 건축공사 0.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직접공사비)		수수료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70억 미만 [직공비x0.0141%]x공기(년)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직노) x 3.545 (건강보험료) x 12.95 (직노) x 4.5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70억 이상 - 120억 미만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퇴직공제부금비]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500억 이상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구멍금씩이 1억 이렇던 건널증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문화재 수리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